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공무원에 한정하여 지급하던 직무발명 보상을 국가에 소속된 비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의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비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근거 마련 (안 제1조, 제2조제1항)

- 1)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공무원”에서 비공무원이 포함된 “공무원등”으로 확대되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 내의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제 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
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u>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u>」(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u>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u> 제1조(목적) ----- 「<u>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u>」-----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u>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u>」-----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